

의안번호	2211905
의 퇴 인	이언주 의원
회 답 일	2025. 12. 29.
추계번호	25A4140

한미 간 조선산업의 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 (국가의 책무)	국가는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 국가는 우리나라 군함 등 조선기업의 수주기회 증대, 규제 완화 등을 위한 미합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함(제2항) 국가는 우리나라 및 미합중국의 군함 등 조선기업에 대한 행정적,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2	안 제5조 (기본계획)	외교부장관은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1항) 기본계획에는 ①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, ②우리나라 및 미합중국의 군함 등 조선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, ③우리나라 및 미합중국 간 군함 등 조선산업의 전문 인력 및 기술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(제2항) 외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제3항)	의무규정
3	안 제6조 (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)	외교부장관은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하여 정부, 공공기관 및 군함 등 조선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,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	재량규정
4	안 제7조 (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)	대한민국 정부는 미합중국과의 조약·협정 등에 따라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·유지·보수 등을 위한 특화 단지를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대한민국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화단지에 필요한 행정·재정·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		대한민국 정부는 「국유재산법」 및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·공유 재산을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미합중국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(제4항) 대한민국 정부는 특화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(제5항)	
5	안 제8조 (기금의 설치)	정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·공급하기 위하여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 기금을 설치	의무규정
	안 제9조 (기금의 재원)	기금은 ①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, ②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, ③제10조에 따른 장기차입금, ④「공공자금관리기금법」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	의무규정
	안 제10조 (장기차입)	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,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음	재량규정
	안 제11조 (기금의 용도)	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할 수 있음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출자 가. 우리나라와 미합중국 간의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 사업 나. 우리나라 조선업의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·유지·보수 등에 관한 수주사업 2.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비용 3. 우리나라 및 미합중국 간 군함 등 조선산업의 전문 인력 및 기술 교류 지원 4.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	재량규정
	안 제12조 (기금의 관리 및 운용)	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리·운용(제1항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①국채·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, ②금융기관에의 예치, ③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등의 방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·운용할 수 있음(제2항)	의무규정
	안 제13조 (기금운용심의회 설치)	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	의무규정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등 근거 규정
1	안 제2조 (국가의 책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5조 (기본계획)	
3	안 제6조 (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약체)	
4	안 제7조 (특화단지의 지정 및 지원)	
5	안 제8조 (기금의 설치)	
	안 제9조 (기금의 재원)	
	안 제10조 (장기차입)	
	안 제11조 (기금의 용도)	
	안 제12조 (기금의 관리 및 운용)	
	안 제13조 (기금운용심의회 설치)	

2. 상세 사유

- 제정안은 우리나라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·유지·보수할 수 있는 특화단지의 지정과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-미 간 조선산업 협력을 지원하는 내용으로, 시행될 경우 재정수입의 감소 및 재정지출의 증가를 수반할 수 있음
 - 재정수입의 감소는 국·공유 재산 무상 대부에 따른 세외수입 감소분임
 - － 안 제7조제4항에 따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기업 등에 대하여 국·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할 경우 기존에 해당 재산으로부터 징수하던 수입(관유물대여료 등)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수입이 감소할 수 있음
 - 재정지출의 증가는 기본계획 수립, 한미 조선동맹 강화 협의체 운영,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,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 설치 등에 따른 지출 확대분임
 - － 안 제2조,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우리나라와 미국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체 운영 등 기반 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재정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
 - － 안 제7조에 따라 미국 군함을 건조·유지·보수할 수 있는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부지 조성에 따른 비용, 전력·수도 등 각종 인프라 구축 비용, 군함 건조 등을 위한 시설투자 비용 등이 발생하여 국가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
 - －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기금이 설치·운영될 경우 정부가 기금의 목적에 맞는 신규 재정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 및 지출 감축 없이 국채 발행 및 장기차입금 조성 등을 바탕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, 이는 국가재정 지출의 증가 요인이 됨

[표] 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 및 재정지출 증가 요인

구분	내용
재정수입 (세외수입)의 감소	· (제7조제4항) 특화단지 입주 기업 및 미국에 대한 국·공유 재산 무상 대부 근거 마련
재정지출의 증가	· (제2조) 우리나라와 미국 간 군함 등 조선산업에 관한 우호협력관계 증진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조선기업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방안 마련 · (제5조) 5년마다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, 이를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 수립 · (제6조) 정부, 공공기관 및 조선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(한미 조선 동맹 강화 협의체) 운영 근거 마련 · (제7조제1항·제3항)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·유지·보수 등을 위한 특화단지 지정 및 행정·재정·기술 등 지원 근거 마련 · (제7조제5항) 정부가 특화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를 부담 · (제8조~제12조) 정부의 출연금, 장기차입금 등을 재원으로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을 설치하고, 미합중국 군함의 건조·유지·보수 사업 수주 등의 용도로 활용 · (제13조)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 설치·운영

□ 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재정수입의 감소액과 재정지출의 증가액을 합산하여 추계할 수 있으나, 각 지원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재정수입 감소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특화단지가 소재할 시·도 및 구역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의 국·공유 재산 현황 및 기존 대여 상황과 제정안에 따라 무상 대부에 활용될 재산의 종류 및 목록 등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나, 이와 관련한 정부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수입 감소액을 추계할 수 없음
 - －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 군함 건조·유지·보수 등을 위한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실시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재정 사업이 없음
- 재정지출 증가액을 추계하기 위해서는 ①특화단지 지정 및 구성에 따른 각종 인프라 및 시설 구축 수요와 ②기금의 구성에 따라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될 재정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추정이 필요하나, 현재 특화단지 및 기금 구성에 대한 정부 계획 등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하여 지출 소요를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, 우리나라는 「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」(2025.11.14.)에 따라 1,500억불 규모의 대미 조선 투자에 대한 회담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¹⁾
- 다만, 해당 투자의 이행을 위한 대책이 2026년도 예산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으며, 현재 제정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한미 간 조선산업 협력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재정사업은 다음과 같음
 - 외교부의 경우 실시 또는 추진 예정인 재정사업은 없으나, 미 상원의원과 우리 조선업계 간 간담회 개최, 주한미국대리대사의 우리 조선소 방문 추진 등 한미 조선협력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음²⁾
 - 산업통상부는 국내 조선업계(협력사 및 기자재)의 미국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미국 현지에 한-미 조선해양 산업·기술 협력센터 등을 구축하기 위한 재정사업 등을 실시 중이며, 2026년 예산은 각 사업의 예산액을 합산하여 총 192억 9,200만원임
 - 방위사업청은 2026년에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MRO(유지·보수·정비) 특화지역을 선정하여 MRO 수주정보, 부품개발, 전문인력 교육 및 협력사 공동활용장비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, 해당 예산은 514억 7,000만원임

* [참고자료] 한미 조선산업 협력 지원 관련 재정사업 실시 현황

1) 설명자료 원문

[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]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: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력을 반영하는 지난 7월의 역사적인 ‘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’ 발표를 재확인하였다. ○ 금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,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(‘승인 투자’)를 포함한다.	[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. Trump’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] REBUILDING AND EXPANDING CRITICAL INDUSTRIES: President Trump and President Lee reaffirmed the historic announcement in July of The Korea Strategic Trade and Investment deal, which reflects the strength and endurance of the U.S.-ROK Alliance. · This deal includes \$150 billion of Korean investment in the shipbuilding sector approved by the United States, which is referred to as the Approved Investments.
--	--

2) 2025.11.17. 외교부 답변자료

- 이에 우리나라에서 미국 군함을 건조·유지·보수할 수 있는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한미 군함 등 조선산업 협력 증진기금의 설치·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에 따른 재정수입 감소액과 재정지출 증가액을 추계할 수 없으므로, 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Ⅳ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김효진	권아영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진	02-6788-4654	hjkim1991@na.go.kr

[참고자료] 한미 조선산업 협력 지원 관련 재정사업 실시 현황

(단위: 백만원)

소관	세부사업명(회계, 코드) -내역사업명	사업 내용	2026년도 예산
산업통상부	중소조선및기자재미국진출지원 (일반회계, 3171-301)	한-미 조선협력 일환으로 국내 조선업계 (협력사 및 기자재)의 미국 시장진출 및 한-미 조선업 협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통합 기업지원	7,663
	한-미조선해양산업기술 협력센터 (일반회계, 3171-445)	조선해양분야 대미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한-미 조선해양 산업·기술 협력센터 구축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	6,644
	중소조선 함정MRO 글로벌 경쟁력 강화지원 (일반회계, 3171-469)	글로벌 함정 규격을 충족하는 MRO 부품 인증·성능평가 기반 및 스마트 MRO 공급망 구축을 위한기업 지원·전문인력양성 체계 마련	4,985
	산업통상부 소계		19,292
방위사업청	지역연계/생태계기반구축 (일반회계, 2637-309)	-	(69,760)
	- 방산혁신클러스터	방산 소재·부품의 선제적 개발 및 대·중소 기업 상생협력 등을 통해 지역기반의 방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, 방사청 -지자체 협약을 통해 5년간 방산특화지역을 선정하고 MRO 수주능력 강화, 전문인력 양성, 부품 품질인증, 공동활용장비 및 기술개발 등 지원	51,470
합계			70,762

자료: 산업통상부 및 방위사업청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